

'18년 제1차 청렴옴부즈만 결과보고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8. 4. 24(화), 14:00~15:30
- 장 소 : 본원(2층 중회의실)
- 참석자 : 김○○(청렴옴부즈만), 김○○(청렴옴부즈만), 임○○(청렴옴부즈만), 전○○(전략기획부), 심○○·한○○(사회참여지원부), 조○○(자립지원부)

□ 논의사항

- 실명신고가 아닌 익명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여부
- 증빙자료 제시 없이 부정수급 신고 시 접수 및 조사 여부
-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
-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른 기관의 대처방법
-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기준

□ 회의결과

- 노인일자리아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이 적용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찰 및 경찰과 같이 익명신고도 접수 조사 필요
 - 단, 신고자의 연락처는 확보할 필요 있음
- 신고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이 상황설명만 있을 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부정수급의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고의 접수와 조사가 필요
- 신고자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원의 조사과정은 물론, 차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시 신고자에 대한 익명 조사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함

- 부정수급 여부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할 경찰이나 관할 검찰에 수사 요청할 수 있음
 - 통상 관할 검찰로 사사의뢰하게 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결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하며, 이 경우 관할 경찰은 통상 3~6개월 내에 수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됨
 - 사건의 경중이나 부정수급액의 정도에 따라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요청하는 방안(예, 1천만 원 이상의 부정 수급 시 검찰 수사의뢰 등 기관의 판단 필요)
 - 조사 및 확인 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경우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 요청에 대하여 청렴음부즈만에 따라 부정수급 액수 등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,
 - 부정수급의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여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메시지 전달과 감사원 또는 복지부의 우리원에 대한 감사 시 각 사업담당 직원들이 직무유기 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했다는 직원보호의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수사의뢰 하는 것이 옳다는 다소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관 차원의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임
- 개발의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정수급은 고소, 개발원의 직접예산이 아닌 제3의 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은 고발, 조사에 따른 명확한 부정수급 증거 없고 정황만 있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추가 조사가 필요 시 진정으로 처리 가능
- 포상금 지급액수는 신고자의 부정수급 신고액에 따른 지급 보다는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전체 규모의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